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53 발의연월일: 2020. 12. 23.

발 의 자:홍문표·김태호·허은아

정진석 · 박덕흠 · 이명수

성일종 • 윤재갑 • 김기현

김희곤 · 류성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당국의 잇따른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의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공동체사회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 따라서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소상공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아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그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집합금지 조치: 임대료의 70%
- 2. 집합제한 조치: 임대료의 50%
-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생 략)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소상공인 중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
			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그 제
			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
			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임대료의 70%
			2. 집합제한 조치: 임대료의 50%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구
			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